



주민자치회 회의록

동 장			간 사	사무국장	회 장	결 재
				이여진	유병복	
일 시	2026.4.9.(목)		장 소	3층		
참석현황	총 원	출석인원	불참인원	비 고		
	32	30	2			
심 의 토 의 안 건	<p>1. 워크숍 일정건</p> <p>2. 제6기 주민자치회 총원에 따른 위원 모집</p>					
의결사항	<p>1. 워크숍 일정건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6월5일(금) 진행 안건에 대해 찬반 거수로 표결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찬성 14명, 반대 15명으로 부결 -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의결함 <p>2. 제6기 주민자치회 총원에 따른 위원 모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 의결 <input type="checkbox"/> 결원 총원 시 위원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임기(임기 : 2026. 7. ~ 2027.12.31.)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자치회 정수 및 공개·추천 선정 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정수 : 47명(현재 위원 32명) ○ 추가 모집 인원 : 15명 이내 ○ 선정비율 : 60 : 40 (공개모집 9명, 동장추천 6명) 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수 및 공개추천 선정 비율 결정: 2026. 4. 17.限 ○ 위원 모집: 2026. 4. 22. ~ 5. 8. ○ 주민자치 위원 후보자 교육 추진: 2026. 5. 11. ~ 6. 23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대면교육(3시간)+집합교육(3시간) 병행, 총 6시간 과정 ○ 추천운영위원회 구성(필요시) 및 공개 추천: 2026. 6. 24. ~ 25. ○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임기 개시 : 2026. 7. ~ 					

경과보고
및
공지사항

1. 각 분과위 보고

- 생활정책분과: 자생단체(바르게살기위원회)와의 마을행사 협업
- 나눔상생분과: 처음하는 분과회의라 상견례 의미로 진행,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수립 예정
- 골목경제분과: 상가번영회 공모사업 연계해서 골목 행사할 예정, 향후일정 추후 논의
- 아파트분과: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들 토대로 금호1동 아파트 단지에 홍보 캠페인 할 예정
- 청소년분과: 마을의제관련 학생 퍼실리테이션 진행 예정

2. 분과 변경 안내

성 명	기존 분과	변경 분과
류덕순	나눔상생분과	아파트분과
정영철	생활정책분과	청소년분과

3. 금호1동 상생협동조합 설립 계획안

- 지속가능한 사업 여러차례 컨설팅 받아 추진,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회의, 정기회의 및 단톡방에 공유
- 인적·물적 유통구조 자원실태조사 운영이 관건이긴 하나 설립 정해지면 경영 컨설팅 수차례 컨펌 진행
- 자세한 내용은 별첨 첨부

4. 「광주 서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」 안내

- 공모기간 : 2026. 4. 6.(월) ~ 6. 30.(화)
- 신청자격 :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, 서구 소재 사업체 임·직원
- 대상사업 : 서구를 대상으로 하는 단년도 소규모 주민생활밀착형 사업
- 공모유형 ※ 단, 프로그램사업의 경우 사업비 규모 2천만원 이하
- 신청방법
 - 홈페이지
 - 서구청 구정살림(<https://www.seogu.gwangju.kr/finance/>) → 제안사업 신청
 - 광주 서구 주민참여(<https://pb.lofin365.go.kr/seogu/main>) → 공모제안
 - 방 문 : 서구청 기획실(7층)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
 - 이 메 일 : chj0312@korea.kr

5. 2026 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활동 제한 사항 안내

□ 상시 제한 사항

- 선거운동 금지(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)
-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(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제1항)
 -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 -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 -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
<p>경과보고 및 공지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-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○ 선거사무관계자(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투표참관인 등) 종사 금지(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2항) □ 선거기간(선거일 전 14일, 5월 21일부터) 중 제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자치회 회의 금지(「공직선거법」 제103조제2항) □ 60일 전 제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행사(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 등) 개최 및 후원 금지(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제2항) □ 주민자치회 활동 가능 사항 검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분과위원회 자체 활동(분과회의, 지역조사 등)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분과모임은 사전에 등록·구성된 분과위원만 참여(폐쇄적) 가능하며, 일반 주민이 갑작스레 참여(인터뷰 등)하는 열린 회의는 “60일 제한”에 따라 금지</u> ○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통상 활동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 증원을 동반한 교양강좌 후원 금지</u>
<p>기타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자치회 단톡방 공지사항에 대한 댓글 작성 시 신중히 올려달라는 의견 제시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논의 결과, 별도 제한 없이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함